

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3-122호

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94-34호(1994.02.1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96호(2015.12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9호(2020.06.11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3-408호(2023.09.14.)로 결정(변경)된 「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」에 대하여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19일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심지구 중 가구(BL 11)의 획지(11-1)(목동 924, 924-3, 924-5)에 대한 교통처리계획(차량출입불허구간, 주차출입구)을 결정(경미한 사항의 변경)하는 사항임.

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적(㎡)		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①	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양천구 목동, 신정동 일원	4,368,463.0	-	4,368,463.0	최초결정일 (1994.2.15.)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4호

※ 1) ①「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」은 금회 폐지되는 「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(714,871.4㎡)」을 “중심지역”, 14개의 공동주택(아파트) 및 그 외 지역을 ‘주거지역 및 기타지역’으로 통칭하며, 구체적 위치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참조

②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2.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3. 도시계획시설에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③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2. 건축물 용도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3. 건축물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4. 건축물 배치·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5.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.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(변경)

- 1) 주거지역(공동주택용지) 및 기타지역(변경없음)
- 2) 중심지역 (목동중심지구)

구분	적용지역	계획내용	비고
보행자 우선도로 1)	근린공원 주변	• 근린공원 인접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(간선도로변 제외)	
차량출입 불허구간	간선 가로변	• 간선가로에서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불허(대지의 입지 상 차량출입이 불가피할 경우 허용)	
주차 출입구	전 구역	• 대지로의 차량출입구는 주차출입구가 표시된 지역에 설치 • 인접대지와 주차출입구를 공동으로 설치 유도	

※ 1) 포장재질, 색 및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조

※ BL11(11-1)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위치 변경

■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위치 변경 사유

구분	가구 / 획지번호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BL 11 / 11-1	차량통행불허구간 (주차출입구)위치변경	○ BL11(11-1)획지 내 복합시설 신축계획에 따른 대규모 획지의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

2. 공공기여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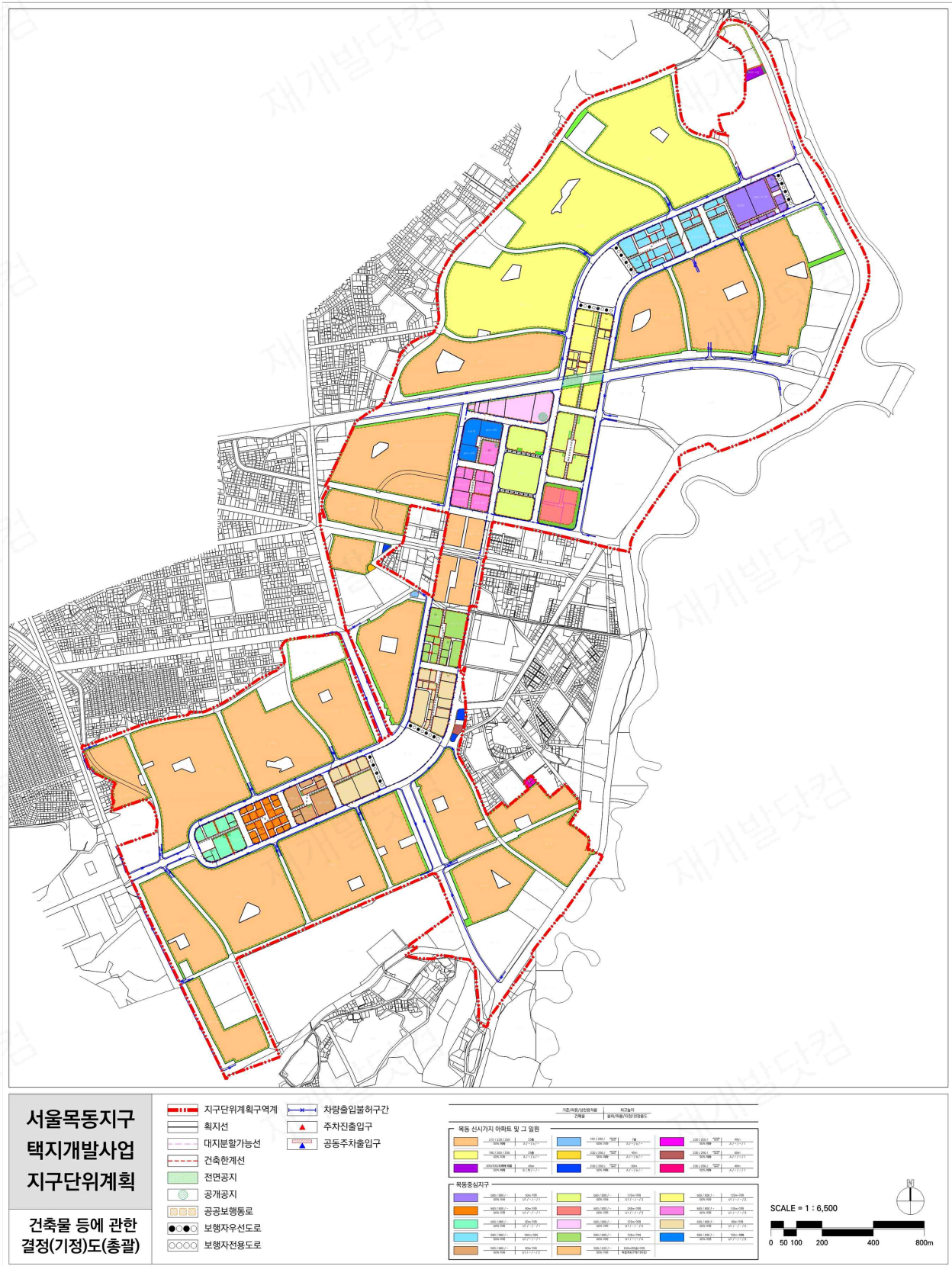
3.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Ⅲ. 관계도면 : 불임참조

Ⅳ. 열람장소 : 양천구 도시계획과 (☎02-2620-3508)에 관계도서를 비치합니다.

※ 고시문은 양천구청 홈페이지(www.yangcheon.go.kr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□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 (총괄)



SCALE = 1 : 6,500

0 50 100 200 400 800m

[illegible][illegible]